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9가합26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조봉제

피고1. 망 B의 소송수계인 미합중국인 C

2. 망 B의 소송수계인 D

3.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E

4.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F

5.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G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희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정

변론 종결2021. 9. 2.

판결 선고2021. 10. 14.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은 각 1/3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 F, G은 각 7/3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5.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B, 피고 D, E, F은 부친인 망 H과 모친인 망 I(이하 '유증자'라고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또한 유증자는 망 H과 혼인하기 전 망 J과 사이에 망 K을 출산하였고 망 K은 L와 혼인하였는데, 피고 G은 망 K과 L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이다. 망 K은 1989. 5. 18. 사망하였고, 처인 L는 망 K의 사망 이후 재혼하여 피고 G은 망 K의 유일한 대습상속인이다.

다. 아울러 피고 C은 망 H의 전처였던 망 M과 망 H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원고와 망 B, 피고 D, E, F의 이복형제이다.

라. 원고와 피고들, 유증자 등에 관한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DIAGRAM: 원고와 피고들, 유증자 등에 관한 가계도(이미지 생략)

마. 망 H은 1995. 1. 28. 사망하였고, 유증자는 망 H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5. 7. 7. 접수 제39723호로 1995. 1.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유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유증자는 2013. 1. 20. 아래와 같이 '유언서'라는 제목 하에 유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전문과 함께 그 하단에 작성일자 및 유증자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유증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장'이라고 한다)을 직접 작성하였다.

유언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N

나 | 은 사후에 이 N 집을 막내딸 A에게 준다.

2013년 1월 20.일

사. 유증자는 2014. 5. 29. 사망하였고, 피고 D은 2014. 8. 27. 서울가정법원에 유증자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위 법원 2014느단8249). 이에 따라 망 B, 원고 및 피고 E, F, G이 유증자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아. 피고 G의 채권자인 O는 피고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위 법원 2018카단1164)을 받은 후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8. 10. 19. 원고와 망 B, 피고 D, E, F,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6 지분 비율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2014. 5. 2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를 마치고, 피고 G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자. 한편, 미혼이며 자녀가 없었던 망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망 B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차. 피고 D의 상속포기 및 망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망 B	1/5	0	-
피고 E	1/5	1/30	7/30
피고 F	1/5	1/30	7/30
원고	1/5	1/30	7/30
피고 G	1/5	1/30	7/30
피고 C	0	1/30	1/30
피고 D	0	1/30	1/30
합계	1	1/5	1

[인정 근거]

○ 피고 C, D, E에 대하여 : 자백 또는 자백간주

○ 피고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증자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은 수증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피고 C, D : 각 1/30, 피고 E, F : 각 7/30)에 관하여 2014. 5.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유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자필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고, 이 사건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 유증자는 원고에게 유효한 유증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G의 상속지분(7/301))에 관하여 2014. 5. 29.자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 주장의 요지 유증자는 이 사건 자필유언장 작성 이전부터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어서 이 사건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 원고에게 유효한 유증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증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장에 그 전문과 작성일자 및 유증자의 주소, 성명을 자필로 각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G의 상속지분(7/30)에 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의미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3, 15 내지 18호증, 을마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영상, 증인 P의 증언 및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증자는 이 사건 유증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원에서 2013. 2. 5.에 실시된 3차 검사 이전인 2012. 2. 28.에 실시된 2차 검사에서도 유증자는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로 평가되었음. 2차 검사가 시행된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3. 1. 20.경에도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음.
- 유증자에 대한 임상적 측정치만을 근거로 유증자의 유언장 작성의 자의성 여부 및 유언장 의미의 이해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일 경우 기억 기능의 손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보호자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는 있으나, 간혹 기억을 해내는 경우들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이름을 보고 사람을 떠올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음.
- 본원에서 실시한 MMSE의 시간 지남력은 경미한 오답에도 점수는 낮아질 수 있어 유언장 작성 당시 날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한편 유증자는 장소 지남력의 경우 2차와 3차 검사시 각각 4/5, 5/5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자신이 있는 장소는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3. 2. 5.에 3차로 실시된 검사에서 유증자의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2점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점수는 문제 해결이나 유사성·상이성에 대한 해석에 심한 장애가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함. 다만 이의 판단은 검사상 정서가와 각성가가 낮은 중립자극들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유연장과 같이 자신과 밀접히 관계가 있는 자극일 경우 수행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유증자의 인지기능 상태는 주의 및 자극 관여도에 따라 하루 내에도 변동 가능성 있어 이를 근거로 치매로 인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확언할 수 없음.

○ 유증자의 2014. 1. 14.자 검사지를 보면 주소 중 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검사 결과로 유증자의 2013년 1월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 2011. 1. 24. 1차 검사 결과부터 유증자의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중등도 수준의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유증자가 자신 행위의 상세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가능성은 있겠음.

○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는 자신의 전반적인 재정문제를 면밀히 살펴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긴 하나, 자신의 재정문제나 상황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유연장을 써야 자신의 딸에게 집을 줄 수 있다'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는 확언하기 어려움.

○ 유증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유증자는 2014년 2월말 이후에 엉뚱한 이야기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기록을 근거로 2013년 1월경의 정확한 의사소통 기능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 유증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등에 의할 때, 유증자는 GDS가 6점으로 측정되고 있어 목적을 두고 행동을 결정할 만한 충분한 사고능력이 부족하기에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있겠으나, 자신의 행동의 의미의 이해 정도는 행위를 환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해당 결과치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유증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등에 의할 때, 유증자는 GDS가 6점으로 측정되고 있어 목적을

두고 행동을 결정할 만한 충분한 사고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행위를 예측할 만한 인식력과 예기력을 갖기 어려운 상태이나, 그 행위 결과에 대한 이해 정도는 행위를 환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해당 결과치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②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Q병원(변경 전 명칭 : R병원)에서 2013. 2. 5. 유증자를 상대로 3번째 실시되었던 MMSE-K(Mini Mental State Exam-Korea) 검사 결과에 비추어 유증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2013. 1. 20. 당시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위 검사 결과와 같은 유증자에 대한 임상적 측정치만을 근거로 2013. 1. 20. 당시 유증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증자의 인지기능 상태는 주의 및 자극 관여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2013. 1. 20. 당시 유증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유증자가 주로 치료를 받았던 Q병원의 유증자에 대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유증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내역이 없었고, 유증자가 위 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치매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유증자는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가 필요할 만큼 중증의 치매 증상을 앓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또한 위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유증자는 2012. 3. 15. Q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14. 2. 19.에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이 사건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인 2013. 1월경을 전후하여서는 약 2년 정도 위 병원에 입원한 내역이 없었고, 유증자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1월경 당시 유증자의 건강상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⑤ 유증자가 Q병원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았던 위 병원 심장내과의 담당의사 S는 유증자가 진료 과정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⑥ 유증자를 장기간 동안 간병한 요양보호사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초경 당시 유증자가 치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유증자가 치매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대략

2013년도 말부터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 C, D 및 생전에 유증자를 알고 지냈던 지인 T 등은 2013. 1월경 당시 유증자의 정신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섭

판사하석찬

판사권원명

별지

1) 피고 G 본인의 상속지분 1/5 + 망 B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분 1/30